

# 청 구 원 인 변 경 신 청 서

사 건 2016제나905 기타(금전)

[ 담당재판부 : 제32민사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케이티 노동조합

우편번호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전화 031-727-2820

## 변 경 내 용

###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재심청구원인을 위 내용으로 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변경합니  
다.

###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이 유

1. 2001년 6월15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목 뼈 골절 및 안면 타박상을 당해 최종은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치료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4일 제 의사와는 다르게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를 하여, 처음에는 시설운영과 과장님께 몸 상태가 정상 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면 좋습니다. 또,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누워 있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고 사정 예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죽변분기 국사가 다른 곳 보다 일이 적다고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죽변분기국사는 제가 근무해보았던 곳인데 실내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예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통증이 있는데(머리 목 어깨부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최종 “의사 장애진단서(갑 제11-1호증)”에는 머리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아프다고 하면 피병이라 오해를 했고, 머리 부분이라 중요하게 생각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갑 제8-1호증)” “재심사결정서(갑 제8-2호증)” 를 했습니다.

죽변 분기국사에 배치 받아 아픈 상태로 일 할 수 없어 처음에는 병가 및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이용하고 과장님께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진행 중이라고 상담하니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갑 제9호증. 제25조(휴직참고))” 휴직하려고 했으나 다른 분에게 연락도해보고 하시더니, 갑자기 휴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휴직사규를 보여주지 않았고, 회사사규를 치워버렸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병이라고 하시어 “그 당시 치료받았던 의사진단서(갑 제11-2호증)”도 제출 했으나 그래도 피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 출근해야 하므로 시설운영과로 출근했습니다. 시설운영과는 사무실인데 제 책상도 없고 해서 케이블운영실은 현장에서 전주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퇴근 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으로 목 안대를

하거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과장님이 피병이라고 여러 번 했고 병원치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를 요구해 사유서도 여러 번 적었습니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 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사유대로 휴직을 활용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2.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2010나173583때 다시 제출한 것” 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하여 회사와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했고 ~ ”

“ ~ “폭로(‘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과 같은데 처음2002년4월에 낸 책책을 출간한 것은 다분히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인정된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에 포함됐습니다. 징계사유통보서에 있다 고해도 저에게만 이치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건 부당합니다.

(‘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갑 제14호증’ 다른 분들의(인터넷 게시내용) 보시면 일 수 있습니다.)

3. 2009가합9702때 피고는 2010. 1.2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무런 계산근거도 없이 막연히 이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청구취지 금액의 명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대충 짐작해서 청구하려고 해도 소송인지비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맺 음

과심 죄로 노사 협의된 사규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고, 징계사유통보서에 없는 내용도 포함된 것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로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해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재심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고

※. 판사님권한으로 가능하시다면 대법원장님께 민사소송법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법을 정비 혹은 개정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주장합니다.(헌법108조 참고)

### ※.참고

4월5일 낸 답변서를 통해서 정부 6번째 민원(1BA-1703-129190) 하여 답변 받았으나 이해 안 되어 다시 7번째 민원 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판사님에게 해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혹 판사님 권한으로 안 된다면 할 것입니다.

2017. 4. .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 귀중